

**군위탁 컨테이너
화물자동차(관용) 보험계약
제안요청서**

2022. 7

**국 토 교 통 부
물류산업과**

□ 목 차 □

I . 과업개요	1
II . 제안 요청 내용	1
III . 참가자격 및 사업자선정	3
IV . 과업지시서	5

I. 과업 개요

- ☐ 공고명 :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(관용) 보험계약
- ☐ 납품기한 : 계약일부터 5일
- ☐ 보험기간 : 2022. 8. 20. 24:00 ~ 2023. 4. 30. 24:00
- ☐ 가입대상 : 12대
- ☐ 구매목적
 - 화물운송 종사자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 물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위탁 중인 국토부 소유 차량(12대) 보험(갱신) 계약 필요
- ☐ 계약방법: 조달 계약
- ☐ 기타사항: 공동계약 불가

II. 제안 요청 내용

- 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

보험종목	보험가입한도액	비고
대인배상 I (책임)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(1억원)	
대인배상 II (임의)	1인당 책임보험보상 초과금액 무한보상	
대물배상(임의)	1사고당 2억원	
자동차상해	1인당 사망·후유장애 1억원, 부상 3천만원(1사고당 무한)	
자기차량손해	손해액20%(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~최고 50만원 적용)	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	1인당 2억원 한도	
운전자연령	관련자료에 기재된 한정운전 특별약관 적용	
물적 할증기준	200만원	
운전자 정보	전연령 / 누구나	

Ⅲ.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

1. 입찰참가자격

가. 입찰참가 자격(①,②,③ 모두를 갖춘 자)

- ①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 허가를(자동차보험) 받은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(자동차보험, 업종코드 : 3828)을 참가 등록을 한자
- ② 보험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(자동차보험)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본사로서 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 100%이상인 업체
- ③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은 제외하며, 감독 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권고, 요구 및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
－ 단,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

나. 기타사항

- ①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전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
- ② 본 입찰은 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」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③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시 제출된 입찰서에 한하여 무효 처리
- ④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
- ⑤ 다이렉트 보험사 입찰 제한
－ (사유)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5개지역(부산, 광주광역시, 수원, 포천, 부평)의 군부대에 배치되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군간부 운전자가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긴급물류를 수송하며 화물연대 조합원운송방해로 인한 차량 파손, 운전자 부상 등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 보험처리, 구상금 청구 등을 보험사 직원이 대행하여야 함에 따라 다이렉트 보험사는 입찰을 제한 함.

2. 사업자 선정

- 가. 「(계약예규)정부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에 근거 예정가격의 88%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
- 나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.
 - ※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.
- 다.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라.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$\pm 2\%$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.

3. 입찰의 무효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「(계약예규)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.
- 나. 유의사항
 - 1)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(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 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2)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(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)이며 마감일(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)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3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 및 「(계약예규)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)을 요청하는 경우,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불공정행위 금지

가.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(이하 이 조에서는 “입찰자 등”이라 한다)는 입찰·낙찰,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- 1) 금품·향응 등의 공여·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- 2)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
- 3)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- 4) 하수급인 또는 자재·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5)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

나.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·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·해제될 수 있고,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라.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“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기타사항

가.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<http://www.g2b.go.kr>)서 확인 후,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.

나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상 대표자(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), 주소,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)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라.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조달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, 통장사본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V. 과업지시서

가.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긴급한 사유로 계약업무가 지연될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.

다.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
- 라.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.
- 마.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 또는 환불하고 차량별로 변경 계약할 수 있다.
- 바.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사. 신규계약 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정한다.
- 아. 대·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(차량 자동승계)로 가입하고, 보험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.
- 자. 보험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시 만료일 15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차.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. 이때(보험해지의 경우) 기존 보험계약사는 기존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- 카.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.
- 타.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.
- 파. 차량별로 각각 보험증서(영수증)를 발행한다.